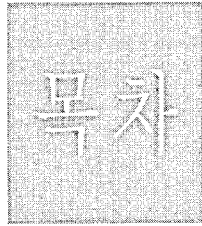




10

##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정 현 태  
상명대, 시간강사



1. 서 론
2. 작은 도서관 개념설정
  - 2.1 법과 기준에 의한 작은 도서관
  - 2.2 해외 도서관기준의 최소조건
  - 2.3 한국적 이념형으로서 '작은 도서관'
  - 2.4 지원/협력모델로서 '작은 도서관'
3.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 3.1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에 관한 전국조사결과
  - 3.2 작은 도서관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4.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역모델
  - 4.1 민간주도모델
  - 4.2 민간협력모델
  - 4.3 관주도 모델
  - 4.4 자치 및 직영 복합모델
5. 작은 도서관 지정제도
  - 5.1 작은 도서관 지정제도의 필요성
  - 5.2 작은 도서관 지정을 위한 평가모형
6.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전략
  - 6.1 민간 도서관활동의 자율성 보장
  - 6.2 민관협력 파트너십 정립
  - 6.3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주민사랑방으로
  - 6.4 건립 및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
  - 6.5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회적 활용
  - 6.6 법적 지원근거 설정
  - 6.7 공공도서관의 분관체제 확장 및 지역 활동 강화
  - 6.8 대중매체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
7. 맺음말

## 1. 서론

우리나라의 도서관문화는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하나로서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주력하여 왔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제부터는 10분 이내 도보 거리 근린생활시설로서 도서관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서비스체제로의 전환기를 요구받고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전국 25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마다 2개관 수준에 머물러 있는 487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민간의 풀뿌리 운동으로 자생하는 전국의 문고운동과 연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기초행정단위 읍면동 3,500여개 수준에 이르는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작은 도서관운동의 시민 참여적 관심을 도서관문화 전반의 성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2. 작은 도서관 개념 설정

### 2.1 법과 기준에 의한 작은도서관

개정된 도서관법과 폐기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는 작은 도서관의 법적 개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문고의 기준이 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준거기준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표 1〉 공공도서관과 문고의 법적 기준

	공공도서관	문 고
시 설	(인구2만 미만 일 때) - 면적 264㎡(약 80평), - 열람석 60석 이상	- 면적 33㎡(약 10평)이상 - 열람석 6석 이상
자 료	- 장서 3,000권 이상 - 연증가 300권 이상	- 장서 1,000권 이상
직 원	- 330㎡(약 100평)이하 사서직원 3인	- 규정 없음

〈참고〉 등 시행령에서

\* 전문도서관의 최소면적은 165제곱미터(약50평), 장서 3,000권 이상.

\* 특수도서관(전자도서관)의 최소면적은 66제곱미터(약50평), 장서 1,500권과 녹음테이프500점 이상, 전자관련 장비구비 등

개정 도서관법에서는 문고의 육성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본법에서 사라지면서, 시행령에서 문

고활동과 관련된 적절한 준거조항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를 맞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는 시설 및 운영여건이 미치지 못하고, 문고보다는 시설규모가 큰 민간의 문고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기대되지만, 실정법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시설규모 80평에 미달하고, 문고로 신고된 10평 이상의 독서시설 중 일정수준의 시설과 자료를 갖춘 공사립문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수준이란 특별히 정해진 경계는 주어져 있지 않으며, 로또기금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대략 30평 내지 40평 이상의 시설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2006년 로또복권기금사업신청서에는 작은도서관을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문고형도서관을 말하며,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평 내외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된 키워드는 “생활친화적”, “문고형도서관”, “저소득층”, “50평 내외”,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등으로, 이중 시설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준으로는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에 마련된 50평 내외 문고형 도서관’으로 요약되고 있다. 2004년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25개 작은도서관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15평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권기금에서 지향하는 작은도서관은 이념적으로 저소득층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화소의 계층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 2.2 해외 도서관기준의 최소조건

작은 도서관의 개념설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작은 도서관 규모에 대한 최소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IFLA/UNESCO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저개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현실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면적 370㎡ (112평), 장서 2,500권, 상근직원1명을 요구하고 있다.

〈표 2〉 IFLA 공공도서관 최저가이드라인

구분	최저 기준	비고
자료	- 최소봉사거점을 위한 최저 장서수준 2,500권 - 인구1인당 1.5~2.5권	
시설	- 개별도서관 최저크기 370㎡(112평)이상 (캐나다 온타리오, 스페인 바르셀로나) - 인구 5,000명당 컴퓨터 1대(캐나다, 호주)	
직원	- 인구 2,500명당 1명의 상근직원 - 직원의 1/3은 사서	cf.전체예산 0.5%~1%는 훈련비

미국 Wisconsin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기준(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http://dpi.wi.gov/pld/standard.html>)에서는, 지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권장되는 작은 공공도서관의 최소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3〉 위스콘신주 공공도서관기준

구 분	최소 기준	비 고
직 원	* 상근직원 1명 * 관장(주당25시간 유급근무)	cf. 1년에 최소 20시간이상 관장의 계속교육지원
자 료	* 장서 8,000권 이상 * 구독정기간행물 30종 이상 * 연간자료구입비 10,000달러(1,000만원)	
시 설	(면적기준 없음) * 주당 최소 25시간 개방	
예 산	(2005년 기준 최소액) 연60,000달러(6,000만원)이상 -관장봉급 18,100달러(월150만원수준) -직원임금 7,600달러(주당15시간이상) -사회복지 8,300달러(봉급의 32%) -자료구입 10,000달러(인쇄, 전자자료 포함) -기타비용 16,000달러(사무, 기술, 교육비 등)	참고> 2005년 60,000달러는 매년 2.5%씩 인상하여 2010년에는 67,900달러 예상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설정된 최소 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최소면적이나 시설기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근직원 1명, 최소장서 8,000권, 주당 25시간 이상 개방 등으로 작은 도서관의 최소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예산에서 상근직원 1명의 임금 18,100달러와 자료구입비 10,000달러, 사무경비 16,000달러 등을 구체적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웨인랜드(D. E. Weingand)교수는 자신의 저서 [Administration of the Small Public Library, 3판]에서 작은 도서관의 조건을 봉사인구 2만5천명 이하의 공공도서관(Small Public Library)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2.3 한국적 이념형으로서 '작은 도서관'

국내의 공공도서관 법규와 기준에서 확인되는 작은 도서관의 최소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작은도서관의 개념과는 일정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려는 작은도서관의 범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서관기준에 미달하는 공사립문고 중 일정 규모(약30~40평) 이상의 문고들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은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있지 못한 공립문고와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는 사립문고를 포함하는 활성화된 문고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과거 마을문고운동으로 표현되었던 지역의 소규모 문고 및 도서관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운동은 과거 마을문고운동의 관주도적 계몽운동을 주민 자치적 지역문화운동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표 4〉 작은도서관과 마을문고 비교

구 분	마을 문고	작은 도서관
목 적	독서진흥, 국민계몽운동	독서진흥, 지역공동체문화운동, 문화 복지
기 능	독서	독서, 독서교육, 정보탐색, 방과 후 과제학습, 주민모임, 문화강좌
봉사 대상	지역 주민	지역주민(특히 어린이, 소외계층)
면 적	10평 이상	30~40평 이상
자 료	도서 1,000권 이상	도서3,000권 이상, 정간물 10종 이상
인 력	비상근	상근인력1인 + 비상근 봉사인력
시 설	서가, 열람석	서가, 열람석, 인터넷PC, 모임방
운영 주체	새마을문고중앙회	민간단체, 개인
활동시기	70~80년대	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방식	관주도 보급	민간 주도 참여

작은도서관은 민간의 사립문고 및 사립도서관 활동가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도서관운동을 지칭하는 이념형적 명사로서, 면적이나 인력, 자료 등의 수준으로 설정되는 공식 개념이라기보다는, 도서관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문고시설을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관수준에서 활성화시키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여백을 메워주는 사립도서관으로 기능하는 독서시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민간주도의 다양한 문고 및 도서관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의 자발적 봉사와 헌신으로 형성된 작은도서관 운동을 공공도서관 분관체제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풀뿌리 문화로 형성된 자치문화운동을 고양하는 한국적 도서관운동의 오랜 전통을 반영하는 이념형적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 및 행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권장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설과 장서, 인력의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작은 도서관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의 최소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협력 파트너로서 바람직한 운영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2.4 지원/협력모델로서 '작은 도서관'

국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공공도서관 및 문고 설치기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기준,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권장기준, 위스콘신 공공도서관기준 등을 종합하고, 문고 및 사립도서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협력파트너로서 분관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요건의 최소단위를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운영모형을 제안하였다.

작은 도서관의 환경적 조건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생활권역의 중심에 소재하며, 반경 1km이 내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열람 및 간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설정하였다.

〈표 5〉 작은 도서관 제안모델

구 분	최소 요건	비 고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100㎡(약30평) 이상(공유면적 제외)</li> <li>- 열람석 10석 이상</li> <li>- 인터넷검색용 PC 2대 이상</li> <li>- 주당 36시간 이상 개방</li> <li>- 열람공간과 별도로 7~8명 규모 소모임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열람 공간 30% 이상</li> </ul>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행본 3,000권, 정기간행물 10종 이상</li> <li>- 연간 자료구입비 300만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소장 디지털자료 접근서비스</li> </ul>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직원 1명 이상 (사서직원을 권장)</li> <li>- 보조인력 1명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직원임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6년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17만원 이상</li> </ul>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협력시스템은 모든 공사립문고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정수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문고를 우선 협력파트너로 연계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특히 민간부문의 다양한 도서관활동이 일정 수준을 지향하도록 바람직한 권장모델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고현황에서는 제시된 분관규모의 작은도서관 모델에 부합하는 문고규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력모델에 부합하는 소수외는 분관적 협력을 도모하고, 영세한 규모의 공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지역협의기구를 통한 자료정리, 관리시스템구축, 관리자교육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이원화된 지원협력체제가 요망된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 스스로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를 통해 꾸려가는 동네 사랑방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독서서비스와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지역 문화강좌 등의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생적 시민운동이다. 작은 도서관 운동의 의의는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욕구를 주민스스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이들의 협동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민들의 참여와 봉사의 풀뿌리 공동체 문화 및 주민들의 민주적인 자치문화 형성, 그리고 공동체 현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통로로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 통합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 3.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 3.1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에 관한 전국조사결과

##### 1) 전국 집계 문고현황

규모의 차이를 두고 문고의 일부를 작은 도서관으로 구분하려는 요구도 있으나, 작은 도서관은 개정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인 문고에 해당하며, 문고와 작은 도서관은 시대의 앞뒤를 두고 주민의 자치조직으로 지역사회 독서운동을 주도하여 왔다는 점에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은 개념으로, 광의의 범주에서는 문고와 작은 도서관은 동일한 활동에 대한 시대적 명칭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즉, 작은 도서관과 문고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이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고활동이 작은 도서관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되며, 문고는 작은 도서관의 출발점이자 잠재적인 발생체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편의상 문고를 작은 도서관의 기초 단위로 보고, 문고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실태분석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문고기준에 부합하는 독서시설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2005년 말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문고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다만 법령상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는 등록의 의무가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립문고의 경우는 등록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등록된 문고는 사립 문고를 중심으로 집계되는 문제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작은 도서관의 유형으로 살펴본 새마을문고의 분석 내용에서 전국 새마을문고가 16개 시도지부에 걸쳐 모두 2,643개나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문고공식 집계 2,872개와 비교할 때, 새마을 문고 대부분이 시군구 공식집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새마을 문고는 그 운영주체로서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시도지부를 공공기관으로 볼 것이냐, 민간기구로 볼 것이냐 등의 판단에 따라 지역마다 공립문고로 혹은 사립문고로 등록하기도 하였으나, 사립문고의 등록의무를 벗어난 공립문고로 간주한 경우 시군구 등록을 하지 않아, 대부분이 문고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지부의 경우 문고활동을 중지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전국 등록문고 현황(2005.12.31 기준)

구분	문고수	연면적 (㎡)	평균(㎡)	열람좌석수	평균열 람석수	보유장서수 (책)	평균보유 장서수(책)	공립	사립
서울	571	27,309	47.8	8,977	15.7	3,033,519	5,312	483	88
부산	130	10,954	84.3	3,625	27.9	472,168	3,632	37	93
대구	61	6,158	101.0	1,600	26.2	151,577	2,485	-	61
인천	77	6,577	85.4	2,215	28.8	359,117	4,664	26	51
광주	42	4,500	107.1	1,941	46.2	156,740	3,732	2	40
울산	44	3,627	82.4	1,233	28.0	106,974	2,431	14	30
대전	69	4,846	70.2	1,792	26.0	271,797	3,939	29	40
경기	546	51,549	94.4	14,399	26.4	1,928,125	3,531	23	523
강원	109	10,518	96.5	2,795	25.6	215,509	1,977	-	109
충북	161	18,869	117.2	5,469	34.0	395,614	2,457	19	142
충남	96	7,610	79.3	2,491	25.9	228,400	2,379	3	93
전북	188	17,278	91.9	5,200	27.7	431,016	2,292	29	159
전남	269	25,036	93.1	7,521	28.0	546,340	2,031	55	214
경북	156	13,865	88.9	5,026	32.2	456,760	2,928	1	155
경남	211	7,043	33.4	1,015	4.8	95,246	451	57	154
제주	142	14,265	100.5	4,119	29.0	450,477	3,172	-	142
합계	2,872	230,004	80(24평)	69,418	24석	9,299,379	3,287책	778 (27.1%)	2,094 (72.9%)

작은 도서관 단위로서 전국의 문고 수는 공립문고 778관(27.1%)과 사립문고 2,094관(72.9%)로 모두 2,872개가 집계되었으며, 문고는 평균 24평의 규모로 24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3,288책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고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 인천의 문고수가 1,194개로서 전체의 41.6%를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대구, 강원, 제주 등은 공립문고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등의 농촌지역이 문고분포가 활발한 반면,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의 광역시 지역의 문고분포가 부진한 것으로 비교되었다.

문고의 면적은 전국평균 80평방미터로 약 24평의 크기로, 이는 10평 이상 등록을 규정한 기준 면적에 비교해 예상보다 큰 규모였으며, 열람석이나 소장자료 역시 6석 이상 및 1,000권 이상의 기준을 넘어 문고 당 24석의 열람석과 3,287책의 규모를 보였다.

## 2) 운영주체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통해 확인된 2,215개 문고 중 운영주체가 확인된 1,542개문고의 운영주체를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문고를 운영하는 단체는 새마을문고중앙회의 307개(19.9%)를 제치고 종교단체 390개(25.3%)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적되었듯이, 새마을문고의 대부분이 공립문고로서 제대

로 등록되지 못한 이유도 있고 새마을 문고의 현저한 쇠퇴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고 169개(11.0%), 개인운영 문고 162개(10.5%), 아파트운영 문고 136개(8.8%)로 비중이 높고 교육청 운영 문고 2개(0.1%), 공공도서관 운영 문고 4개(0.3%)로 문고지원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의 문고운영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두드러진다.

〈표 7〉 문고의 운영주체별 분포

구분	운영주체 (단위: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교육청	동사무소	민간단체	종교단체
서울	40(25.0%)	0	0	60(37.5%)	9(5.6%)	15(9.4%)
부산	7(8.8%)	2(2.5%)	0	11(13.8%)	3(3.8%)	20(25.0%)
대구	0	0	0	0	8(16.7%)	9(18.8%)
인천	2(5.0%)	0	0	5(12.5%)	3(7.5%)	9(22.5%)
광주	0	0	1(2.7%)	6(16.2%)	1(2.7)	12(32.4%)
울산	4(11.4%)	0	0	7(20.0%)	0	10(28.6%)
대전	3(4.1%)	0	0	42(57.5%)	3(4.1%)	11(15.1%)
경기	8(2.3%)	0	0	10(2.8%)	15(4.2%)	120(34.0%)
강원	0	1(1.6%)	0	2(3.1%)	5(7.8%)	38(59.4%)
충북	27(28.7%)	0	0	3(3.2%)	5(5.3%)	19(20.2%)
충남	4(7.7%)	0	0	1(1.9%)	2(3.8%)	29(55.8%)
전북	1(0.8%)	0	0	5(3.9%)	30(23.3%)	41(31.8%)
전남	2(3.3%)	1(1.7%)	0	8(13.3%)	2(3.3%)	20(33.3%)
경북	2(1.6%)	0	0	0	4(3.1%)	13(10.2%)
경남	30(20.4%)	0	1(0.7%)	8(5.4%)	20(13.6%)	22(15.0%)
제주	0	0	0	1(2.2%)	8(17.4%)	2(4.3%)
계	130(8.4%)	4(0.3%)	2(0.1%)	169(11.0)	118(7.7)	390(25.3%)

구분	운영주체 (단위: 관)					계
	아파트	새마을문고	종합복지관	개인	기타	
서울	7(4.4%)	23(14.4%)	1(0.6%)	3(1.9%)	2(1.3%)	160(100.0%)
부산	1(1.3%)	13(16.3%)	5(6.3%)	13(16.3%)	5(6.3%)	80(100.0%)
대구	6(12.5%)	0	1(2.1%)	22(45.8%)	2(4.2%)	48(100.0%)
인천	5(12.5%)	1(2.5%)	1(2.5%)	5(12.5%)	9(22.5%)	40(100.0%)
광주	5(13.5%)	1(2.7%)	4(10.8%)	7(18.9%)	0	37(100.0%)
울산	5(14.3%)	0	0	1(2.9%)	8(22.9%)	35(100.0%)
대전	0	0	4(5.5%)	5(6.8%)	5(6.8%)	73(100.0%)
경기	64(18.1%)	70(19.8%)	4(1.1%)	42(11.9%)	18(5.1%)	353(100.0%)
강원	2(3.1%)	5(7.8%)	0	6(9.4%)	5(7.8%)	64(100.0%)
충북	9(9.6%)	21(22.3%)	3(3.2%)	6(6.4%)	1(1.1%)	94(100.0%)
충남	2(3.8%)	1(1.9%)	0	12(23.1%)	1(1.9%)	52(100.0%)
전북	6(4.7%)	8(6.2%)	3(2.3%)	20(15.5%)	15(11.6%)	129(100.0%)
전남	1(1.7%)	21(35.0%)	0	3(5.0%)	2(3.3%)	60(100.0%)
경북	2(1.6%)	83(65.4%)	4(3.1%)	12(9.4%)	4(3.1%)	124(100.0%)
경남	19(12.9%)	32(21.8%)	1(0.7%)	5(3.4%)	9(6.1%)	147(100.0%)
제주	2(4.3%)	28(60.9%)	0	0	5(10.9%)	46(100.0%)
계	136(8.8%)	307(19.9%)	31(2.0%)	162(10.5%)	93(6.1%)	1542(100.0%)

### 3) 예산규모

예산규모가 확인된 1,542개 문고의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문고 당 평균 518만원 정도의 지출이 집계됨. 전체적 예산규모에서 인건비 부분이 181만원(35%)으로 가장 높고, 자료구입비 158만원(30.6%), 기타 운영비 129만원(25%),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9.6%) 등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문고마다 1년에 책 구입에 지출하는 금액이 158만원 정도라면, 2005년 출판연감의 평균출판단가 11,200원으로 계산하여 평균 141권 내외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문고의 장서규모가 3,287책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4.3% 정도의 장서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바람직한 자료 성장률인 10%에 못 미치는 수치로서 문고운영 규모의 영세성을 반증하고 있다.

문고의 특성상 자원봉사인력과 비상근 인력이 자원봉사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도, 인건비 연간 지출액 181만원은 월 15만원정도로, 이는 인건비라기보다는 참여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나 식사비용으로도 부족한 금액으로 문고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표 8〉 문고의 예산규모

구분	1관당 연간예산지출내역 (단위: 천원)				
	인건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기타운영비	계
서울	1107.1(31.4%)	1619.9(45.9%)	139.5(3.9%)	657.5(18.6%)	3524(100.0%)
부산	2419.1(41.4%)	1587.1(27.1%)	372.4(6.4%)	1464.1(25.1)	5842.7(100.0%)
대구	3958.3(36.6%)	2844.5(26.2%)	250.6(2.3%)	3787.1(34.9%)	10840.5(100.0%)
인천	1799.1(28.0%)	2276.3(35.4%)	881.8(13.7%)	1473.8(22.9%)	6431.0(100.0%)
광주	4845.8(50.4%)	1943.3(20.5%)	682.3(7.1%)	2139.2(22.2%)	9610.6(100.0%)
울산	835.6(14.7%)	2724.8(47.9%)	957.2(16.8%)	1166.4(20.6%)	5684.0(100.0%)
대전	813.1(25.1%)	1418.7(43.9%)	354.4(11.0%)	646.9(20.0%)	3233.1(100.0%)
경기	1568.6(29.6%)	1824.9(34.1%)	761.4(14.4%)	1145.9(21.6%)	5300.8(100.0%)
강원	2313.1(39.0%)	1811.3(30.6%)	715.4(12.0%)	1088.1(18.4%)	5927.9(100.0%)
충북	778.9(34.0%)	724.4(31.6%)	359.6(15.7%)	427.6(18.7%)	2290.5(100.0%)
충남	1849.3(41.4%)	1307.3(29.2%)	241.6(5.4%)	1071.3(24.0%)	4469.5(100.0%)
전북	190.4(7.5%)	968.1(38.1%)	49.2(1.9%)	1330.5(52.5%)	2538.2(100.0%)
전남	211.4(25.6%)	332.3(40.3%)	80.3(1.8%)	200.8(24.3%)	824.8(100.0%)
경북	642.2(21.3%)	1213.9(40.3%)	359.9(11.9%)	798.2(26.5%)	3014.2(100.0%)
경남	5293.4(42.2%)	2499.4(20.0%)	1633.2(13.1%)	3081.3(24.7%)	12507.3(100.0%)
제주	291.4(31.4%)	246.3(26.6%)	159.9(17.2%)	229.9(24.2%)	927.5(100.0%)
전국평균	1807.3(34.9%)	1583.9(30.6%)	499.9(9.6%)	1294.2(24.9%)	5185.4(100.0%)

한편 문고 예산의 수입내역을 보면, 행정기관지원이 36%, 운영자 부담이 20%, 후원회비 7.7%, 종교단체지원 7.3%, 문고회비 및 이용료 4.3%, 개인기부 2.8%, 기업체지원 1.1% 등으로 나타나, 여러 다양한 경로의 기금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개별문고별로 보면,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자금의 수입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4) 인력운영

공공도서관은 통하여 확인 2006년 8월 현재 전국 2,215개 문고의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고당 평균 근무인원은 4.43명이고, 이중 자원봉사자가 3.72명(85%)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시간제 0.2명(4.7%), 전임직원 0.36명(8%), 기타인력 0.1명(2.2%)으로 나타나, 극히 일부의 문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고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극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표 9〉 문고의 인력현황

구분	1관당 인력현황 (단위: 명)				
	전임	시간제	자원봉사	기타	계
서울	0.12(1.3%)	0.06(0.7%)	8.17(94.2%)	0.33(3.8%)	9.17(100.0%)
부산	0.38(5.2%)	0.34(4.8%)	6.30(88.1%)	0.13(1.9%)	7.15(100.0%)
대구	0.69(26.0%)	0.31(12.0%)	1063(61.0%)	0.04(1.0%)	5.80(100.0%)
인천	0.90(10.3%)	0.26(3.0%)	7.28(83.7%)	0.26(3.0%)	8.70(100.0%)
광주	0.42(12.5%)	0.31(9.6%)	2.36(71.8%)	0.13(4.1%)	3.22(100.0%)
울산	0.16(7.1%)	0	1.67(74.8%)	0.40(18.1%)	2.23(100.0%)
대전	0.13(2.2%)	0.02(0.3%)	5.54(96.8%)	0.03(0.5%)	5.72(100.0%)
경기	0.26(6.5%)	0.21(5.3%)	3.45(87.3%)	0.03(0.7%)	3.95(100.0%)
강원	0.51(18.5%)	0.17(6.2%)	2.04(74.2%)	0.03(1.1%)	2.75(100.0%)
충북	0.52(20.5%)	0.23(9.0%)	1.79(70.5%)	0	2.54(100.0%)
충남	0.37(22.7%)	0.14(8.6%)	1.1(6.7%)	0.02(1.0%)	1.63(100.0%)
전북	0.54(27.9%)	0.02(1.1%)	1.22(63.2%)	0.15(7.8%)	1.93(100.0%)
전남	0.05(13.1%)	0.05(13.1%)	0.27(71.0%)	0.01(2.8%)	0.38(100.0%)
경북	0.17(2.6%)	0.07(1.1%)	6.17(94.4%)	0.12(1.8%)	6.53(100.0%)
경남	0.51(6.9%)	1.14(15.4%)	5.67(76.6%)	0.04(1.1%)	7.36(100.0%)
제주	0.03(1.6%)	0.02(1.1%)	1.79(97.3%)	0	1.84(100.0%)
전국평균	0.36(8.0%)	0.20(4.7%)	3.72(85.0%)	0.10(2.2%)	4.43(100.0%)

이들 근무인력 중에서 사서자격 및 기타 독서지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참여인원은 전체 인원의 평균 4.43명의 15%정도인 평균 0.68명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유자격자의 87.6%인 평균 0.6명이 독서지도사 등의 독서관련 단기교육이수자 혹은 교적이수자 등이 대부분이었고, 사서직 자격자는 전체 유자격자의 12.4%에 불과하였다.

#### 5) 자료운영

조사대상 문고 2,215개의 평균 장서는 도서 3,216권, 비도서자료 46점, 연속간행물 3종, 온라인 콘텐츠 0.3종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전자자원으로서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함께, 전자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문고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

〈표 10〉 문고의 장서현황

구분	장서현황 (단위: 권)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온라인콘텐츠	계
서울	2785.4(99.2%)	19.8(0.7%)	0.7(0.02%)	0.06(0.002%)	2805.9(100.0%)
부산	3935.1(97.3%)	100.8(2.4%)	11.8(0.3%)	0(0%)	4047.7(100.0%)
대구	2971.8(98.4%)	42.3(1.4%)	5.3(0.2%)	0	3019.4(100.0%)
인천	3101.3(98.5%)	46.5(1.4%)	0.8(0.1%)	0	3148.6(100.0%)
광주	3882.1(98.4%)	60.1(1.5%)	1.5(0.05%)	0.02(0.01%)	3943.7(100.0%)
울산	2581.7(99.3%)	15.4(0.6%)	1.3(0.05%)	0.02(0.00%)	2598.4(100.0%)
대전	3216.1(98.9%)	32.1(0.9%)	0.5(0.01%)	1.4(0.04%)	3250.1(100.0%)
경기	3326.3(98.2%)	39.2(1.1%)	16.7(0.5%)	3.0(0.08%)	3385.2(100.0%)
강원	3522.2(98.5%)	51.4(1.4%)	2.7(0.1%)	0	3576.3(100.0%)
충북	1855.1(97.1%)	53.4(2.8%)	1.2(0.06%)	0.9(0.04%)	1910.6(100.0%)
충남	9009.9(99.4%)	51.3(0.5%)	2.5(0.02%)	0	9063.7(100.0%)
전북	1942.2(97.9%)	40.7(2.1%)	0.3(0.01%)	0	1983.2(100.0%)
전남	802.9(97.2%)	21.5(2.6%)	0.2(0.02%)	0.04(0.00%)	824.6(100.0%)
경북	3665.9(98.9%)	36.6(0.9%)	2.1(0.06%)	0.9(0.04%)	3705.5(100.0%)
경남	3950.5(96.8%)	128.4(3.1%)	1.9(0.1%)	0	4080.8(100.0%)
제주	911.5(99.6%)	2.9(0.3%)	0.03(0.1%)	0	914.4(100.0%)
전국평균	3216.2(98.4%)	46.4(1.4%)	3.1(0.1%)	0.3(0.1%)	3266.1(100.0%)

6) 전산화

조사대상 2,215개 문고의 전산화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서 전산시스템사용여부에 대해 전체의 23.7%인 526개 문고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나머지 1,689개 문고 약 77%가 전산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문고의 전산화현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를 소유한 문고들의 평균 컴퓨터 대수는 약1.5대 정도이고, 영상기구나 오디오 등의 장비보유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문고의 전산화 현황

구분	전산시스템 사용	1관 당 컴퓨터 및 시청각 기기 보유현황(대)			
		컴퓨터	영상기기	오디오	계(100%)
서울	136(56.2%)	1.6(80.0%)	0.2(10.0%)	0.2(10.0%)	2.0
부산	28(29.2%)	1.8(58.1%)	0.6(19.3%)	0.7(22.6%)	3.1
대구	10(20.8%)	1.3(46.4%)	0.6(21.4%)	0.9(32.2%)	2.8
인천	21(29.2%)	1.1(78.5%)	0.1(7.1%)	0.2(14.4%)	1.4
광주	10(26.3%)	3.2(76.1%)	0.5(11.9%)	0.5(11.9%)	4.2
울산	10(27.0%)	1.3(65.0%)	0.4(20%)	0.3(15%)	2.0
대전	22(26.2%)	1.2(80.0%)	0.2(13.3%)	0.1(6.6%)	1.5
경기	167(33.5%)	1.0(71.4%)	0.2(14.3%)	0.2(14.3%)	1.4
강원	12(18.8%)	3.2(78.0%)	0.5(12.3%)	0.4(9.7%)	4.1
충북	7(6.4%)	1.6(80.8%)	0.2(10.0%)	0.2(10.0%)	2.0

충남	6(8.1%)	1.4(77.8%)	0.2(11.1%)	0.2(11.1%)	1.8
전북	11(6.5%)	0.7(77.8%)	0.1(11.1%)	0.1(11.1%)	0.9
전남	4(1.6%)	0.3(76.0%)	0.1(25.5%)	0	0.4
경북	23(18.1%)	1.2(35.2%)	1.1(32.4%)	1.1(32.4%)	3.4
경남	59(36.4%)	2.0(86.9%)	0.2(8.7%)	0.1(4.4%)	2.3
제주	0	0.7(100.0%)	0	0	0.7
계	526(23.7%)	1.5(71.5%)	0.2(12.7%)	0.3(15.8%)	2.0(100%)

### 7) 개관시간 운영

문고의 평균 개관시간은 하루 4.6시간이고, 주당 약4.2일을 개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개관시간운영을 조사한 결과, 공휴일 개관을 실시하고 있는 문고는 전체 2,215개 문고 중 379(17.1%)개이고, 오후6시 이후 개관하는 문고는 1,595개(72.0%)로 확인되었다. 자원봉사에 주로 의존하는 문고운영 실정을 고려할 때, 공휴일 개관과 오후 6시 이후 운영이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적지 않은 문고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표 12〉 문고의 개관현황

구분	개 관 현 황			
	1관당 개관시간(시간)	주당 개관일수(일)	공휴일개관(관)	야간개관(18시 이후)(관)
서울	5.1	5.0	79(33.1%)	160(66.1%)
부산	4.2	4.2	9(9.4%)	18(18.8%)
대구	6.3	5.3	6(12.5%)	26(54.2%)
인천	2.9	3.1	4(5.6%)	6(8.3%)
광주	7.2	5.5	10(26.3%)	17(44.7%)
울산	4.4	4.7	3(8.1%)	9(24.3%)
대전	4.7	4.5	2(2.4%)	14(16.7%)
경기	3.1	3.4	49(9.8%)	105(21.1%)
강원	6.9	6.1	36(56.3%)	31(48.4%)
충북	4.3	3.9	15(13.8%)	30(27.5%)
충남	4.4	3.7	20(27.0%)	21(28.4%)
전북	5.5	4.5	60(35.5%)	33(19.5%)
전남	1.9	1.2	16(6.3%)	19(7.5%)
경북	4.5	4.3	17(13.4%)	33(26.0%)
경남	5.8	5.1	27(16.7%)	61(37.7%)
제주	2.8	2.2	26(18.6%)	37(26.4%)
계	4.6	4.2	379(17.1%)	620(28.0%)

### 8) 운영프로그램

문고에서 실시하는 각종 서비스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자료열람(1,120관, 25.1%)과 자료대출(1,074관, 24.0%)이었고, 이어서 독서실제공(463관, 10.4%)과 공부방 및 학습지도(402관, 9.0%), 독서지도(375관, 8.4%), 독서토론(259관, 5.8%), 어린이문화강좌(211

관, 4.7%), 어린이캠프(156관, 3.5%) 순으로 나타나, 운영프로그램이 주로 어린이 독서와 학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문고의 운영프로그램

구분	운영프로그램 - 다중응답 (단위: 관)					
	자료열람	자료대출	독서실	공부방 및 학습지도	독서토론	독서지도
서울	140(39.1%)	142(39.7%)	20(5.6%)	11(3.1%)	6(1.7%)	9(2.5%)
부산	56(21.1%)	58(21.8%)	23(8.6%)	31(11.7%)	23(8.6%)	31(11.7%)
대구	46(25.4%)	40(22.1%)	10(5.5%)	10(5.5%)	21(11.6%)	23(12.7%)
인천	27(18.8%)	28(19.4%)	15(10.4%)	13(9.0%)	12(8.3%)	19(13.2%)
광주	27(17.2%)	25(15.9%)	26(16.6%)	23(14.6%)	12(7.6%)	14(8.9%)
울산	11(25.6%)	12(27.9%)	6(14.0%)	4(9.3%)	1(2.3%)	2(4.7%)
대전	61(34.5%)	55(31.1%)	12(6.8%)	9(5.1%)	7(4.0%)	10(5.6%)
경기	230(21.2%)	229(21.1%)	116(10.7%)	89(8.2%)	75(6.9%)	118(10.9%)
강원	51(20.7%)	48(19.5%)	27(11.0%)	31(12.6%)	12(4.9%)	22(8.9%)
충북	42(25.0%)	39(23.2%)	29(17.3%)	25(14.9%)	6(3.6%)	10(6.0%)
충남	32(20.1%)	26(16.4%)	22(13.8%)	15(9.4%)	12(7.5%)	21(13.2%)
전북	127(32.5%)	118(30.2%)	33(8.4%)	39(10.0%)	18(4.6%)	33(8.4%)
전남	49(27.4%)	47(26.3%)	28(15.6%)	18(10.1%)	6(3.4%)	12(6.7%)
경북	83(24.8%)	84(25.1%)	31(9.3%)	34(10.1%)	17(5.1%)	19(5.7%)
경남	108(22.5%)	104(21.7%)	47(9.8%)	41(8.6%)	30(6.3%)	28(5.8%)
제주	19(21.1%)	19(21.1%)	18(20.0%)	9(10.0%)	1(1.1%)	4(4.4%)
계	1120(25.1%)	1074(24.0%)	463(10.4%)	402(9.0%)	259(5.8%)	375(8.4%)

구분	운영프로그램 - 다중응답 (단위: 관)					
	어린이캠프	어린이대상 문화강좌	성인(주부)대상 문화강좌	가족단위 프로그램	기타	계
서울	1(0.3%)	6(1.7%)	13(3.6%)	1(0.3%)	9(2.5%)	358(100.0%)
부산	11(4.1%)	9(3.4%)	10(3.8%)	6(2.3%)	8(3.0%)	266(100.0%)
대구	8(4.4%)	7(3.9%)	8(4.4%)	5(2.8%)	3(1.7%)	181(100.0%)
인천	8(5.6%)	7(4.9%)	6(4.2%)	5(3.5%)	4(2.8%)	144(100.0%)
광주	4(2.5%)	7(4.5%)	9(5.7%)	4(2.5%)	6(3.8%)	157(100.0%)
울산	2(4.7%)	2(4.7%)	2(4.7%)	0	1(2.3%)	43(100.0%)
대전	4(2.3%)	6(3.4%)	5(2.8%)	5(2.8%)	3(1.7%)	177(100.0%)
경기	35(3.2%)	74(6.8%)	57(5.3%)	16(1.5%)	44(4.1%)	1083(100.0%)
강원	18(7.3%)	11(4.5%)	9(3.7%)	7(2.8%)	10(4.1%)	246(100.0%)
충북	4(2.4%)	3(1.8%)	4(2.4%)	0	6(3.6%)	168(100.0%)
충남	12(7.5%)	7(4.4%)	4(2.5%)	0	8(5.0%)	159(100.0%)
전북	5(1.3%)	8(2.0%)	4(1.0%)	0	6(1.5%)	391(100.0%)
전남	7(3.9%)	5(2.8%)	0	1(0.6%)	6(3.4%)	179(100.0%)
경북	13(3.9%)	19(5.7%)	24(7.2%)	5(1.5%)	6(1.8%)	335(100.0%)
경남	23(4.8%)	31(6.5%)	33(6.9%)	12(2.5%)	22(4.6%)	479(100.0%)
제주	1(1.1%)	9(10.0%)	7(7.8%)	3(3.3%)	0	90(100.0%)
계	156(3.5%)	211(4.7%)	195(4.4%)	70(1.5%)	142(3.2%)	4467(100.0%)

9) 이용현황

평일 문고이용자의 평균인원은 약 3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단 이용자수 응답에 소극적인 무응답이 802관(36.2%)에 이르고 있는 점은, 자원봉사인력으로 운영되는 이들 문고의 운영여건상 기초적인 이용자 통계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로 평가된다. 전체문고의 23.7%에 불과한 업무시스템의 전산화를 보급함으로써, 기초적인 통계업무의 개선이 요망된다.

〈표 14〉 문고의 이용자수

구분	평일 1일 평균이용자 수						계	1관당 평균인원
	5명 미만	5~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명 이상	무응답		
서울	13(5.4%)	23(9.5%)	23(9.5%)	34(14.0%)	41(16.9%)	108(44.6%)	242(100.0%)	208.7
부산	2(2.1%)	16(16.7%)	19(19.8%)	25(26.0%)	11(11.5%)	23(26.0%)	96(100.0%)	22.9
대구	13(27.1%)	5(10.4%)	7(14.6%)	12(25.0%)	4(8.3%)	7(14.6%)	48(100.0%)	13.3
인천	5(6.9%)	2(2.8%)	11(15.3%)	18(25.0%)	5(6.9%)	31(43.1%)	72(100.0%)	13.1
광주	4(10.5%)	2(5.3%)	9(23.7%)	15(39.5%)	7(18.4%)	1(2.6%)	38(100.0%)	25.1
울산	7(18.9%)	10(27.0%)	6(16.2%)	7(18.9%)	3(13.5%)	2(5.4%)	37(100.0%)	19.4
대전	11(13.1%)	9(10.7%)	11(13.1%)	27(32.1%)	9(10.7%)	17(20.2%)	84(100.0%)	18.2
경기	26(5.2%)	35(7.0%)	87(17.5%)	134(26.9%)	53(10.6%)	163(32.7%)	498(100.0%)	20.3
강원	13(20.3%)	13(20.3%)	12(18.8%)	20(31.3%)	1(1.6%)	5(7.8%)	64(100.0%)	13.9
충북	33(30.3%)	22(20.2%)	19(17.4%)	14(12.8%)	3(2.8%)	18(16.5%)	109(100.0%)	9.6
충남	10(13.5%)	10(13.5%)	12(16.2%)	10(13.5%)	2(2.7%)	30(40.5%)	74(100.0%)	9.1
전북	23(13.6%)	13(7.7%)	21(12.4%)	33(19.5%)	27(16.0%)	52(30.8%)	169(100.0%)	63.4
전남	8(3.1%)	8(3.1%)	9(3.5%)	15(5.9%)	6(2.4%)	209(82.0%)	255(100.0%)	3.7
경북	41(32.3%)	13(10.2%)	32(25.2%)	24(18.9%)	3(2.4%)	14(11.0%)	127(100.0%)	11.6
경남	31(19.1%)	23(14.2%)	25(15.4%)	38(23.5%)	25(15.4%)	20(12.3%)	162(100.0%)	21.4
제주	16(11.4%)	6(4.3%)	10(7.1%)	6(4.3%)	2(1.4%)	100(71.4%)	140(100.0%)	3.4
계	256(11.5%)	210(9.9%)	313(14.4%)	432(19.5%)	202(9.1%)	802(36.2%)	2215(100%)	29.6

이용자의 연령별 구성은 대체로 초등학생(46.2%)과 주부(15.9%)가 주된 이용자로서 집계됨. 위 문고의 운영프로그램이 주로 어린이와 주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통계로서, 문고는 어린이가 주된 이용자라는 일반적 통념을 확인시켜 주었다.

〈표 15〉 문고이용자의 연령구성

구분	이용자 연령별 구성비율 (단위: %)						계
	유아 7세 이하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및 성인	주부	노인	
서울	10.1	38.3	12.1	15.9	20.1	3.5	100.0
부산	7.7	44.6	13.6	11.7	20.9	1.5	100.0
대구	10.9	50.1	19.1	8.4	11.1	0.4	100.0
인천	12.4	45.9	14.5	6.9	18.7	1.6	100.0
광주	9.7	52.7	15.8	8.4	11.2	2.2	100.0



울산	19.6	30.1	12.7	7.1	30.3	0.2	100.0.
대전	7.2	45.8	14.9	8.4	22.6	1.1	100.0.
경기	13.9	47.2	12.2	8.3	17.2	1.2	100.0.
강원	10.6	55.8	13.1	8.7	7.5	4.3	100.0.
충북	5.7	43.8	18.9	14.2	15.5	1.9	100.0.
충남	11.3	52.8	16.5	7.3	9.9	2.2	100.0.
전북	3.9	41.4	19.8	18.7	10.8	5.4	100.0.
전남	7.2	46.2	16.2	12.3	15.9	2.2	100.0.
경북	9.2	47.5	11.3	14.5	15.7	1.8	100.0.
경남	11.1	35.4	16.6	10.1	22.9	3.9	100.0.
제주	6.7	62.6	12.6	10.3	5.4	2.4	100.0.
전국평균	9.8	46.2	15.1	10.7	15.9	2.3	100.0.

### 3.2 작은 도서관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운영여건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는,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의 관련 당사자들로서 문고, 공공도서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006년 7월21일부터 8월 말까지 각각의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한 약 20%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모두 3차에 걸쳐 독촉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응답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되었다.

〈표 16〉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참여기관

구 분	응답 참여 기관수	비 고
- 작은 도서관(문고)	285관	- 공립문고 221관 - 사립문고 64관
- 공공도서관	135관	- 지자체소속 34관 - 교육청소속 101관
- 기초지방자치단체	73개	- 시군구(市郡區)
- 지역교육청	56개	- 광역교육청 산하 지방교육청
합 계		549건

#### 1)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의 작은 도서관 지원 실태조사 결과

가.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30.1%에 불과하였고, 교육의 96.4%는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에 비교하여 문고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설립운영조례나 지원 계획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 모름	4	5.5	0	0.0
- 있다	22	30.1	2	3.6
- 없다	47	64.4	54	96.4
합계	73	100.0	56	100.0

## 나. 문고 및 작은 도서관 지원 실적

문고 및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경우 지원 실적이 64.4%에 이르고, 교육청도 23.2%가 지원 실적을 보고하였고, 이는 문고 및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표 18〉 문고 및 작은 도서관 지원 실적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 모름	5	6.8	1	1.8
- 있다	47	64.4	13	23.2
- 없다	21	28.8	42	75.0
합계	73	100.0	56	100.0

## 다. 문고 및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식

문고 및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 단체의 지원방식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 45.2%가 직접지원을 실시한 반면, 교육청은 19.6%가 공공도서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실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9〉 문고 및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식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 없음	21	28.8	43	76.8
- 지자체 및 교육청 직접지원	33	45.2	1	1.8
- 공공도서관을 통한 간접지원	18	24.7	11	19.6
- 기타	1	1.4	1	1.8
합계	73	100.0	56	100.0

## 라. 문고 및 작은 도서관 지원내용

문고 및 작은 도서관에 지원 실적을 보고한 단체의 지원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경우 도서구입 비지원이 50.7%, 운영비지원 13.7%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교육청은 운영비지원 7.1%, 정보화

지원 3.6%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20〉 문고 및 작은 도서관 지원내용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 없음	23	31.5	46	82.1
- 운영비지원	10	13.7	4	7.1
- 도서구입비 지원	37	50.7	1	1.8
- 인력활용지원	0	0.0	1	1.8
- 정보화지원	1	1.4	2	3.6
- 기타	2	2.7	2	3.6
합계	73	100.0	56	100.0

마. 문고 및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여건

문고 및 작은 도서관 지원업무의 전방에 위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지원 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자체는 보통 43.8%, 다소 좋지 않음 21.9%인데 비교해서, 교육청은 좋지 않다 33.9%, 보통 32.1%를 지적하여,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들이 작은 도서관 지원 업무에 대해 보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 문고 및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여건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 모름	1	1.4	2	3.6
- 매우 좋다	3	4.1	0	0.0
- 좋은 편이다	10	13.7	8	14.3
- 보통	32	43.8	18	32.1
- 다소 좋지 않음	16	21.9	9	16.1
- 좋지 않다	11	15.1	19	33.9
합계	73	100.0	56	100.0

바. 공공도서관 분관기능으로서 작은 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작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으로 연계하여 협력할 경우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의견은, 지식정보서비스 및 문화 사랑방 역할을 두고 지자체 71.2%, 교육청 71.4%를 지적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보임.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활성화되는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문화 사랑방의 개념으로 모아지고 있다.

〈표 22〉 공공도서관 분관기능으로서 작은 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구 분	지자체	%	교육청	%
- 모름	6	8.2	6	10.7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거점으로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14	19.2	10	17.9
- 지식정보서비스 및 문화 사랑방 역할	52	71.2	40	71.4
- 기타	1	1.4	0	0.0
합계	73	100.0	56	100.0

2) 공공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지원 실태조사 결과

가. 작은 도서관 지원 실적 유무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35관중 51관(37.8%)이 지원 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지원 실적이 없는 공공도서관이 77관(57%)으로 더 많았다

〈표 23〉 작은도서관 지원실적 유무

구 분	빈도	퍼센트
- 모름	7	5.2
- 있음	51	37.8
- 없음	77	57.0
합계	135	100.0

나. 작은 도서관 지원내용

공공도서관들의 작은 도서관 지원내용을 조사한 문항에서는 도서 및 자료지원이 25관(18.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도서구입비지원(9관, 6.7%), 자료정리 등 컨설팅(5관, 3.7%) 등의 순으로 공공도서관의 문고 및 작은도서관 지원의 초점은 도서자료지원이 중점사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24〉 작은 도서관 지원내용

구 분	빈도	퍼센트
- 없음	83	61.5
- 운영비지원	2	1.5
- 인력지원	3	2.2
- 도서구입비지원	9	6.7
- 정보화지원	1	.7
- 근무인력 교육지원	1	.7
- 상호대차지원	3	2.2
- 도서 및 자료지원	25	18.5
- 자원봉사자지원	1	.7
- 자료정리 등 컨설팅	5	3.7
- 기타	2	1.5
합계	135	100.0

다. 작은 도서관 지원 근거

작은 도서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확인한 결과, 공공도서관 내부 사업부서의 발의에 의한 경우가 19관(14.1%)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지시가 11관(8.1%)이었으며, 합리적인 제도화에 의한 지원근거로서 조례에 의한 지원과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원이 각각 6관(4.4%)과 1관(0.7%)로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제도에 의하기 보다는 일시적 발의와 지시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작은 도서관 지원 근거

구 분	빈도	퍼센트
- 모름	85	63.0
- 조례	6	4.4
- 중장기계획	1	.7
- 지자체 또는 교육청 지시	11	8.1
- 사업부서 발의	19	14.1
- 민원	4	3.0
- 기타	9	6.7
합계	135	100.0

라. 현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 가능한 분야 1,2,3순위

공공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지원 가능한 분야는,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지원(21.5%)과 도서 및 자료지원(20.7%), 자료정리 등 컨설팅(19.3%)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2순위 3순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보이고 있는 항목으로, 누계로 보면 자료정리 등 컨설팅(54관), 도서 및 자료지원(41관), 근무인력 교육지원(34관) 등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현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 가능한 분야 1,2,3 순위

구 분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없음	7	5.2	91	67.4	117	86.7
- 운영비지원	4	3.0	0	0.0	0	0.0
- 인력지원	4	3.0	3	2.2	0	0.0
- 도서구입비지원	7	5.2	1	0.7	1	0.7
- 정보화지원	5	3.7	0	0.0	0	0.0
- 근무인력 교육지원	29	21.5	3	2.2	2	1.5
- 자료정리 직접지원	7	5.2	1	0.7	0	0.0
- 상호대차지원	10	7.4	5	3.7	1	0.7
- 도서 및 자료지원	28	20.7	11	8.1	2	1.5
- 자원봉사자지원	2	1.5	3	2.2	0	0.0
- 자료정리 등 컨설팅	26	19.3	17	12.6	11	8.1
- 기타	6	4.4	0	0.0	1	0.7
합계	135	100.0	135	100.0	135	100.0

마.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의 형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 및 지원 시스템의 형태로서 공공도서관이 선호하는 방식은, 작은 도서관의 일정부분을 지원(34.1%)하거나, 단계적 분관운영(31.9%)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작은 도서관과의 지원 협력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단계적인 실시를 지적함으로써, 직접 지휘 감독하는 책임지원시스템보다 다소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의 형태

구 분	빈도	%
- 모름	5	3.7
-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책임지원	12	8.9
-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일정부분 지원	46	34.1
- 작은도서관 요청에 대한 지원	29	21.5
- 단계적 분관운영	43	31.9
합계	135	100.0

바.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시 바람직한 역할

지역 내 공립문고를 공공도서관으로 개발할 때, 그 역할로서 바람직한 것은, 지식정보서비스 제공(24.4%)의 역할 보다, 문화 사랑방의 역할(66.7%)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문화 사랑방으로서, 주민에게 독서와 교육뿐만 아니라, 강좌와 공동행사를 통한 친교의 광장이자 참여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주민생활에 밀착한 작은 도서관의 폭넓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화시 바람직한 역할

구 분	빈도	%
- 모름	10	7.4
- 공공도서관의 현장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역할	33	24.4
- 문화 사랑방 역할	90	66.7
- 기타	2	1.5
합계	135	100.0

3) 작은 도서관의 공공도서관과 협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가.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 1,2순위

공공도서관으로 지원되기를 희망하는 우선지원 분야는 1순위에서 운영비지원(42.8%), 자료구입비지원(18.9%)이 지적되었고, 2순위에서는 자료구입비지원(23.9%), 도서 및 자료지원(17.5%)이 지적되었음. 문고가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분야는, 운영비지원이 가장 많고, 다음

이 자료구입비 지원, 도서 및 자료지원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 1,2순위

구분	1순위	%	2순위	%
- 모름	24	8.4	31	10.9
- 운영비지원	122	42.8	32	11.2
- 인력지원	27	9.5	32	11.2
- 자료구입비지원	54	18.9	68	23.9
- 정보화지원	14	4.9	21	7.4
- 근무인력교육지원	7	2.5	13	4.6
- 자료정리직접지원	2	.7	6	2.1
- 상호대차지원	3	1.1	6	2.1
- 도서및자료지원	24	8.4	50	17.5
- 자원봉사자지원	3	1.1	10	3.5
- 자료정리등 컨설팅	3	1.1	15	5.3
- 기타	2	.7	1	0.4
합계	285	100.0	285	100.0

나. 공공도서관 지원요청과 지원 유무

문고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협조요청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5%의 문고가 지원 및 협조요청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문고는 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하여 지역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0〉 공공도서관 지원요청과 지원 유무

구분	공공도서관에 지원요청	%	공공도서관의 지원	%
- 모름	3	1.1	5	1.8
- 있다	141	49.5	84	29.5
- 없다	141	49.5	196	68.8
합계	285	100.0	285	100.0

다. 공공도서관의 지원내용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내용은, 30관이 도서구입비 지원을, 24관이 도서 및 자료지원을 지적함으로써, 자료지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서 지적된 운영비 지원이나, 자료정리컨설팅 등의 지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공공도서관의 지원내용

구 분	빈도	퍼센트
- 모름	197	69.1
- 자료정리 직접지원	4	1.4
- 자료정리컨설팅	3	1.1
- 도서구입비지원	30	10.5
- 운영비지원	7	2.5
- 정보화지원	3	1.1
- 도서 및 자료지원	24	8.4
- 기타	17	6.0
합계	285	100.0

라. 공공도서관과 문고협력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

사립문고 221관, 공립문고 64관 등 전국의 문고 285관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시스템에 대한 기초조사결과,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문고는 51개(17.9%),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에 일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문고는 109개(38.2%), 문고의 지원요청에 가능한 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문고는 85개(29.8%), 단계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문고는 33개(11.6%)로 나타나, 문고들이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대해 매우 기대감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표 32〉 공공도서관과 문고협력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

구 분	빈도	%
- 모름	7	2.5
-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 책임지원	51	17.9
- 공공도서관이 지역문고 일정지원활동	109	38.2
- 문고지원요청사항에 대해 가능한 지원	85	29.8
- 단계적인 분관운영	33	11.6
합계	285	100.0

## 4.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역모델

### 4.1 민간주도모델 - 개인운영 작은 도서관과의 지원/협력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용인), 모퉁이어린이도서관(대전) 등에서와 같이 개인의 헌신으로 설립된 작은 도서관과의 지원/협력모델이다. 느티나무 어린이 도서관과 같이 개인도서관이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개인운영 작은 도서관들은 시설 및 운영규모가 영세한



문고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 수준으로 연계될 수 있는 문고는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열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어 물품의 기부와 바자회, 후원금 등 주민의 성원으로 지역도서관으로 기능하지만, 안정적인 재정보험이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주민들이 직접 수서목록을 선정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생활 속 작은 도서관의 의미를 구현하는 모델로 주민 자치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순기능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 시설과 운영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지원/협력의 방식은 지역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열람 공간(Reading Room) 혹은 대출거점(Delivery Station)으로 활용하는 수준이 적절하다. 일정수준의 자료지원과 자원봉사 참여인력에 대한 도서관교육, 전산장비 지원, 네트워크유지보수 등이 지원/협력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민간주도모델은 주민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운영되는 모델로, 재정 및 운영인력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착과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영세한 수준의 문고에 대한 지원/협력의 내용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에 따라서는 지원협력을 명분으로 하여 자신들의 도서관 운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공공도서관의 주도적 역할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예상되기도 한다.

#### 4.2 민간협력모델 - 협의체 혹은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지원/협력

부천시 작은 도서관협의회나 창원의 (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 의한 위탁운영과 같이, 작은 도서관 건립운영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지역협의체 혹은 민간단체에게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하는 지원/협력 모델이다. 민간에 활발한 작은 도서관 운영을 민간협의기구나 단체에 일임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역의 공공도서관서비스망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조성사업모델로 예상된다.

민간협력모델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사업단체와 민관 파트너쉽 형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일정규모이상의 민간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공사립문고를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과 연계가 필요한 소재지 작은 도서관 운영자를 공모하여, 일정수준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사회단체 및 공공시설에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운영 작은 도서관보다는 시설 및 운영규모가 기대되므로, 분관적 지원/협력의 서비스거점으로 개발하는데 유리하다.

이 모델은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인 지역운동가들의 참여를 통해, 작은 도서관 활동의 사회적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 및 민간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 금액을 매개로 작은

도서관 설립운영을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의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전용되거나, 작은 도서관 운동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다양한 시민운동가들의 이기적 의견에 좌우되는 문제의 소지도 있다.

#### 4.3 관 주도 모델 - 공공도서관직영 공립문고 위주의 지원/협력

기존 문고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의 작은 도서관 활동이 부진한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지역내 공공도서관과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자체운영비확보가 가능한 읍/면/동 지역과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에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로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부녀회(혹은 청년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실무담당자를 선발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력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작은 도서관활동이 부진한 지역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작은 도서관 등의 불씨를 지핀다는 의미에서 잠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주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져 민간의 자율적 도서관활동이 태동하면,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활성화지원으로 초점을 전향할 필요성이 요망된다.

관 주도 모델은 공간 확보가 용이한 공공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접근성이나 사업의 연속성에서 유리하고, 단기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작은 도서관 보급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조성단계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정 규모이상의 공립문고 지원에 치중하다 보면,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작은 도서관 활동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 또한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자치단체 의존비용이 과중하게 설정되고, 관리운영자의 역할이 소극적일 경우 단기에 생명이 소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 4.4 자치 및 직영 복합모델 - 작은 도서관 활성화정도에 따라 병행되는 지원/협력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행정경험이 어느 정도 성숙한 경우,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의 다양한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작은 도서관 활성화정도와 공립 사업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참여도서관을 최대화하는 모델이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활동이 우수한 작은 도서관에는 자율적 민간지원모델과 민관협업체 모델을 통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간접 지원/협력을 하는 것과 함께, 작은 도서관 활동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주도의 직영 체제를 병행하는 복합적 지원/협력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동일 행정구역내에서도 신시가지와 구중심지가 혼재하는 도시여건을 고려하여, 도서관 활동기

반이 양호한 주민밀집지역의 개인운영 작은 도서관과는 분관 기능의 호혜적 협력관계로 교류하고, 분산적 환경의 군소 작은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협의회 등의 협력조직을 통해 이동도서관서비스체제로 지원하며, 공공시설 내 공립문고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거점으로서 열람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 지원/협력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 사립문고와 공립문고의 지원/협력에도 차이를 두어, 사립문고의 경우 민간의 자율적 운영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협의회를 통해 간접 지원하고, 공립문고에 대해서는 직영 체제를 통해 직접 관리운영을 수행한다.

복합모델은 운영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협력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지원/협력시스템 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차별화된 지원협력관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지출, 선별기준 및 사후평가 등 복잡한 지원방식에 대한 지원자의 혼란 등이 예상된다.

## 5. 작은 도서관 지정제도

### 5.1 작은 도서관 지정제도의 필요성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2006년 현재 전국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문고는 2,872개로 이중에서 30평 이상의 문고는 모두 634개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30평 이상의 문고를 모두 공공도서관의 분관기능으로 개발하겠다는 작은 도서관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은 세부적인 진행 방식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협력하는 작은 도서관은 면적 규모가 중요한 선정요건일 수 있겠지만, 분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여건 등을 얼마나 충실히 갖추고 있는가를 선별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문고 중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민관협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선별하여, 지역분관으로 지정하는 작은 도서관 지정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은 도서관 지정제도는 일정 수준이상 사립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지역분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분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상호대차나 분담수집, 순회강좌, 지역행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분관건립에 따른 시설투자 등의 과도한 초기부담을 덜고, 단기에 직영분관 수준의 지역거점 망을 확보하여, 소규모 분관중심의 주민밀착형 공공도서관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 협력모델로 지적될 수 있다.

작은 도서관의 지정기준은, 앞서 제안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모델에 근접한 운영여건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기준 항목을 가중치로 환산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요구하게 된다. 선별적 지원/협력체제의 초기단계인 1차 실시년도에는 기준점수 이상의 우수한 작은 도서관을 우

선 파트너로 지정하되, 점진적으로 지원금이나 협력프로그램의 여건이 증가하는 대로 평가점수의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2 작은 도서관 지정을 위한 평가모형

평가항목은 작은 도서관 제안모델에서 제시되었던 시설, 자료, 직원, 운영의 4분야로 구분하여 바람직한 권장요건을 설정하며, 항목마다 평가비중을 달리하여 중요도에 따라 8점부터 2점까지 가중치를 할당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중치 할당 평가방식은 운영에 필요한 최저기준을 내세우면서도 편의에 따라 가중치를 변경하고, 기준점수를 낮추어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바람직한 운영조건의 각 항목을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각각의 기준항목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작은 도서관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선별방식이다.

〈표 33〉 작은 도서관 평가모형

구분	최소기준(봉사인구 5,000명 기준)	가중치	기준 충족 여부	점수
시설	- 면적 100㎡(약30평)	8	기준총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 열람석 10석 이상	3		
	- 인터넷검색용 PC 2대 이상	4		
	- 별도 8~10명 규모의 모임 공간	2		
	- 어린이 공간 비중 30% 이상	3		
	소계	20		
자료	- 단행 3,000권 이상	8	기준총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 정기간행물 10종 이상	3		
	- 전자책 등 비도서 자료 구비	2		
	- 검색 및 대출시스템	4		
	- 연간 자료구입비 300만원 이상	3		
	소계	20		
직원	- 상근직원 1명이상(*)	8	기준총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 상근직원의 자격유무	3		
	- 상근직원의 임금수준(최저생계비)	2		
	- 보조인력 1명 이상	3		
	- 자원봉사자 참여 5명이상	4		
	소계	20		
운영	- 주당 36시간 이상 개방	8	기준총족 x 3점 기준미달 x 1점	
	- 운영 매뉴얼	3		
	- 독서교육프로그램	4		
	- 주민행사 및 모임	3		
	- 회원제 운영	2		
	소계	20		
합계(최고240점, 최저80점) 000점 이상				

\* 인력부문의 상근직원 1명은 필수조건

평가점수는 시설, 자료, 직원, 운영 범주별로 5개 항목에 20점 가중치를 배정하여, 합계 최고 240점부터 최저80점이 되도록 하였다. 항목별 가중치 배분에서는 각 범주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면적과 단행본 소장수, 상근직원여부, 주당36시간이상 개방 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하되, 문고와 차별되는 도서관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상근직원의 항목을 필수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선별기준의 최저점은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정도와 지원/협력의 예산규모에 맞게 일정수준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6.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전략

### 6.1 민간 도서관활동의 자율성 보장

1951년부터 10여 년간 농촌에 책보내기 운동을 주도하였던 엄대섭 선생은 1968년 신동아 7월호 인터뷰기사에서, 농촌에 책을 보내는 것이 '주는 사람 본위'의 사업이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자책하며, 농촌에 문고를 조성하는 사업은 농민들에게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책을 사보는 자율적인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술회한 바 있다. 그는 농촌의 마을문고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운동조직, 정부의 행정지원, 전문적인 지도기관, 뜻있는 농어촌 활동가, 마을단위의 시설, 좋은 자료 등의 여러 조건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을문고운동 이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행정적 계도위주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지역 활동가 주도의 자율적인 민간운동에 생명을 불어넣은 직간접지원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도서를 기증하고 자원봉사하며, 각종 기부활동이 생활화 할 수 있는 자생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도서관은 일정한 평가방식에 따른 작은 도서관 지정제도 혹은 지역문고협의회 등을 통한 간접지원체제 등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운영방식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참여하는 작은 도서관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두고 지원/협력 사업에 참여시키되, 사업의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후 지원사업의 성과를 1년 단위로 면밀히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선지원후평가 방식의 지원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6.2 민관협력 파트너십 정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생명력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좌우되는 민간주도 혹은 민관협력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문고협의회', '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책읽는사회를만들기 위한국민운동',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동화를읽는어른들의모임' 등등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을 함께 하는 시민단체와의 연대적 협력이 사업성패의 선결요건으로 판단된다.

부천의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례에서는, 해당지역 시민단체, 기업인, 시의원, 지역 언론,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협력기구를 통한 협력방식이 작은도서관 지원체계에서 주효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발적 시민조직으로 하여금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에서 자율적 책임을 행사하도록 예산을 위탁하고, 도서관운영과 자원봉사 및 기부운동 등을 통해 주민자치문화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시민단체들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협력 파트너로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사업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1)도서구입비 지원이나, 2)상호대출서비스 뿐만 아니라, 3)직원공동교육과 4)해외연수, 5)자동화목록관리, 6)독서문화 공동행사, 7)국립중앙도서관 보유원문DB 접근개방, 8)전자도서 및 디지털자원 공동보급, 9)시설개보수지원, 10)우수운영사례 포상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작은 도서관은 물론 영세한 공사립문고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두되, 일부 영리사업으로 변질된 지역문고협의체와 협력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망된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특성상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민관협력을 사업의 기본모양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계몽운동으로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사업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협력사업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적의 도서관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의 참여적 봉사를 내세우는 민간단체 주도가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 및 독서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가칭)작은 도서관 사랑 시민연대 “를 출범시키고, 문화관광부나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재정의 일부를 회원기구로 참여하고, 교보문고, 출판사, 서적유통회사, 도서관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전자책 및 전자정보서비스 업체 등 도서관주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 정기적인 작은 도서관 관련 학술포럼, 작은도서관운동 주제사이트운영, 작은도서관운동 소식지발간, 작은도서관 전국대회, 현장활동가 워크숍, 매스컴과의 기획프로그램 등 조성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6.3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주민사랑방으로

생활밀착형 근린시설로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1)지역사회 정보센터, 2)어린이 독서교육시설, 3)지역주민 여가선용시설, 4)지역주민의 교류센터 등으로서 지역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주민사랑방을 지향하도록 한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자료를 선정하고 정리하고 규칙을 만들어 실행하는 자율적 운영과정에서 형성되는 참여와 봉사의 협동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주민 교류의 사랑방으로 기능함으로써, 공동체 통합과 친목에 기여하는 유익한 생활시설로서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 나가는 광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마다 특성화된 축제행사에 주제자료전시회나 백일장, 문학의 밤, 시문화전, 동시대회 등으로 적극 참여하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논술대회, 정보탐색대회, 영어백일장, 향토문예선발대회, 향토자료기획전, 도서관자원봉사자의 밤, 지역음악축제, 향토연극제, 책 바꿔보기 등 지역주민의 교제와 화합에 기여하는 공동체행사를 주도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

### 6.4 건립 및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

걸어서10분 이내, 장서 3,000권, 30평 이상 근린시설로서 기초행정단위 읍면동 3,573곳에 인구 2만5천 명당 작은 도서관 1개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제일의 당면과제는 건립 및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 문고의 수입내역 조사결과는 행정기관지원 36%, 운영자 부담 20%, 후원회비 7.7%, 종교단체지원 7.3%, 문고회비 및 이용료 4.3%, 개인기부 2.8%, 기업체지원 1.1% 등 다양한 경로의 기금이 집계되었다. 그러나 개별문고는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자금의 수입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지적되며, 특히 행정기관으로 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 작은 도서관운동을 지속적인 지역사회 도서관인프라로 개발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을 조례제정과 같은 합법적 지원시스템으로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망된다.

현재는 로또복권기금지원으로 작은 도서관조성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삼성재단, 에스콰이어문화재단의 도서관지원사업의 예에서와 같이, 장차는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봉사 조직과 작은 도서관 1관씩을 결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후원세력의 확보전략이 필요하다.

작은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주민조직을 우선으로 선정함으로써, 자원봉사와 기부 등으

로 꾸려가는 자생적 운영조건을 전제로 하되, 사업의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소재 기업 및 시민조직의 관심과 후원을 세금공제나 지역문화시설 이용우대 등의 제도적 보상으로 연계하는 자치단체 수준의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지원협력의 인센티브로서 일정 금액의 도서비나 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자원공유 등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 민간 활동의 자생력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선도적 협력을 위한 재원 및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작은 도서관의 예산규모는 문고 당 평균 518만 원정도로, 인건비 181만원(35%), 자료구입비 158만원(30.6%), 기타 운영비 129만원(25%),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9.6%) 등으로 확인되었다. 인건비 연간 지출액 181만원은 월 15만 원정도로, 이는 참여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나 식사비용으로도 부족한 금액으로 문고운영에서 자원봉사의 의미를 확인케 한다.

### 6.5 공중시설 유희공간의 사회적 활용

전국의 문고시설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주민자치센터 23.7%, 종교시설 23.2%, 아파트 13.3%, 상가건물 10.5%, 복지회관 6.9%, 마을회관 6.5%, 독립건물 4.1%, 기타공공시설 3.8%, 주택 0.9%, 학교 0.3%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의 공중시설 비중이 약40%정도 되었다.

자치단체 산하 관련기관이나 공중시설 등은 대부분 지역주민 생활공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회적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부 시설에는 이를 이유로 지역주민의 독서교육과 여가선용의 공익적 목적을 두고 공사립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립문고와 달리 공립문고의 대부분은 공간을 할애하는 수준에 그치고, 문고의 관리와 활용에 소극적인 곳이 많아, 형식적인 전시시설로서 사회적 관심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일부 자발적인 시민조직에게 공립문고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토록 주선하고, 이의 운영과 관리는 자율적 시민조직이 꾸려가도록 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공중시설(시행령 제33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시설로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지방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공중시설)에 설치된 공사립문고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해당지역 시민조직에게 작은 도서관 운영모델로 위탁 운영하도록 지정함으로써,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를 유인하고, 공공도서관은 이의 관리운영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의 협력활동으로 지역주민 조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6.6 법적 지원근거 설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0조(문고의 운영) 제2항에서 “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의무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당 조항이 개정 도서관법에서 삭제됨으로 해서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법규상의 준거조항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새마을문고로 대표되는 문고운동은 80년대 말 까지 새마을운동중앙회 주도의 행정자치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90년대 들어 지방자치행정이 확장되어, 중앙정부의 주도권이 약화되면서 새마을문고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약화되어, 현재는 새마을문고의 대부분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한 보조금지원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표 34〉 문고지원 근거법령

관계법령	해당조항	지 원 내 용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0.12.13 법률 제3269호)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 제1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00.1.12 법률 제6118호)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문고활동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주관부서를 행정자치부에서 문화부로 이관하여, 도서관과 문고의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6.7 공공도서관의 분관체제 확장 및 지역 활동 강화

지역의 공사립문고 중 일정수준이상의 기준모델평가를 거쳐 선별 지정된 작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으로 활용하고, 기준이하의 영세한 문고들은 지역협의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체제하에 열람과 대출서비스 거점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서비스 체계를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국 25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마다 2개관 수준인 487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간의 작은 도서관을 소규모 분관으로 연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촉진하고, 특히 작은 도서관운동의 시민 참여적 관심을 도서관문화 전반의 성장으로 유인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 도서관과 공사립 영세문고의 표준적인 관리운영지침을 편람으로 작성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작은 도서관과 문고의 개발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적인 규모의 도서관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운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물론 이들과 협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공사립문고 등을 참여시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도서관을 선발 포상하여 모범사례를 널리 보급하며, 국가적 도서관정책의 당면현안과 추진과제를 개선(feedback)하는 정기적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한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등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표준모델을 지표화하여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기초적 여건을 갖추도록 촉진하며, 성과가 우수한 포상기관에게는 시설개선비용이나 직원해외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친화적인 경쟁적인 서비스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반적인 도서관문화의 생활화를 촉진한다.

앞서 공공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공도서관들은 작은 도서관에게 도서 및 자료를 직접지원하거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치중하고, 정보화지원이나 인력지원, 자원봉사자 및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할 수 있는 장래 지원사업의 내용으로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근무인력 교육지원, 상호대차지원, 도서 및 자료지원, 자료정리 컨설팅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결국 공공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지원은 자료지원과 교육지원으로 집약되었으며, 운영비 지원이나 시설 및 장비지원 등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 35〉 공공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기능순위

우선순위	주요범주	지원 내용
1순위	자료지원	도서 및 자료지원, 자료구입비, 상호대차, 자료운영 컨설팅
2순위	교육지원	운영자교육, 정보화 지원, 공동행사
3순위	시설 및 운영비 지원	리모델링, 신규설립, 전산장비(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인건비, 시설유지비, 지역 협의회 운영비

### 6.8 대중매체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

1977년 마을문고의 소관부처가 문교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된 것이나, 1990년 도서관전담부서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는 과정, 2001년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에 의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안의 제기 등에서 도서관계의 여론을 반영한 중앙언론의 보도와 매스컴의 관심은 도서관 현안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기본 취지는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운동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조직으로 연계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선진서비스 모델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민관의 기존인프라를 연계하여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선결조건이며, 민간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서비스 체제로 유인하는데 따르는 민간의 거부감과 부정적 시각을 순화하고 민관협력의 파트너십모델로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중앙 및 지방 언론 매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지역 작은 도서관 및 문고의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홍보용 보도자료 작성법과, 지방언론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협력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문화과 혹은 공보실 등과 협력하여 세세한 활동과정을 지방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데 노력한다.

한국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독서주간과 같이 4월 넷째 주 혹은 10월 넷째 주를 “작은도서관 공동행사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 규모의 공동행사와 작은 도서관 대회, 우수사례포상 및 홍보 등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에서 집중화된 참여캠페인을 실시한다.

## 7. 맺음말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와 봉사로 운영되는 자생적 문고조직이 자체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지원대책을 수립하되, 무리한 개입이나 혹은 지나친 방임 모두 귀중한 문고운동의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민간 운

동기들의 넘치는 의욕을 공공도서관의 활력으로 연계하는 효율적인 민관협력시스템의 구축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역 문고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모범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하여 우수사례를 제공한 공공도서관들도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오랜 기간 협력의 범위 밖에 머물던 문고활동을 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산과 인력 및 경험 등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 자치적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작은 도서관 활동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밀착형 도서관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조성사업계획은, 자칫 일부 활성화된 소수 사례를 과신하여 교과서적 보급을 권장하는 추수주의적 발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주민 자치적 문고운동의 기반은 어느 정도 시민의식의 성숙과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일부 지역의 활성화된 모델은 자체의 지역적 특수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된 고유사례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마을문고수준이 될 수도 있고, 진전된 민관협력모델이 될 수도 있다. 지역의 행정력, 주민의 참여의식, 공공도서관의 지원능력 등이 고려되어 합리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하되, 주민 자치적 작은 도서관운동의 취지와 활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3,500개 읍면동 행정단위마다 1관의 공공도서관을 보급한다는 물리적 시설중심의 도서관 확장전략은 새로운 통신기술과 정보서비스기술을 반영하는 새로운 서비스방식의 모색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작은 도서관서비스는 공공도서관자료를 대출해 주는 상호대차의 수준을 넘어, 공공도서관이 구축하는 전자책과 전자저널을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역 내 대학 및 전문도서관 사서들과 연계한 참고 정보서비스망을 구축 제공하고, 저작권을 해결한 음악 및 영상자료를 스트리밍 서비스한다거나,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웹을 통한 방과 후 과제지도를 서비스하며, 공공도서관이 구축한 주제게이트웨이 및 포털서비스의 공유자원과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국회도서관 등이 구축한 공공DB에 대한 접근서비스 등으로 기능면에서의 접근인프라로서 역할지우기 위한 정보기술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선진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불투명한 전망에 대한 일부 위기의식의 근저에는,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물적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서 비롯하는 물리적 시설로서의 도서관 무용론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사명과 기능의 많은 부분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잠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가진 일부는, 작은 도서관을 과거 마을문고방식의 독서시설 보급운동의 반복으로 비판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자치문화 이념에 부응하는 작은 도서관의 참여와 봉사의 민주적 전통과 공동체적 가치를 폄훼하며,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특별조직까지 만들어 조성사업에 나서는 것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동안 국내 공공도서관 지역망은 250여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단위의 도서관보급을 명분으로 일정 규모이상 중대형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왔다면, 이제부터 작은 도서관은 3,500여 읍면동 행정단위 공공도서관 보급을 조기에 달성하는 한 방법으로, 기왕에 조성된 민간의 작은 도서관 시설을 공공도서관과 연계 활용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서비스체계를 접근성에 기초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촉매로서 시대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세훈. 2002. 『도서관중장기발전방안』.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서울도서관연구회 봉사분과위원회. 1994.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작은 도서관 갖기 운동. 『서울시도서관연구회지』, 10: 22-28.
- 이병목. 2005. 『도서관법규총람』. 서울: 구미무역 출판부.
- 이용남. 2000. 마을문고운동의 초기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27-47.
- 이용남. 2001. 『새마을문고운동40년사 1961-2000』. 서울: 새마을문고중앙회.
- 정정식. 1996.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도서관연구회지』, 12: 183-206.
- IFLA & UNESCO. 2002.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번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McCabe, Ronald B. 2001. Civic Librarianship -Renewing the social mission of the public library. Lanham: Scarecrow Press.
- Gorman, Michael. 2006. 미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구축방안 국제 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8월25일.
- Thorhugle, Jens. 2006. 덴마크도서관시스템.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구축방안 국제 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8월25일.
- Weingand, D. E. 1992. Administration of the Small Public Library, 3rd. ed. Chicago: ALA.
-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05. 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Fourth edition. Madison, WI. [2006.9.9인용]  
 <<http://dpi.wi.gov/pld/standard.html>>